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장
람	

제1350호 2018. 4. 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58호 공시송달공고 2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234 외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4. 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5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4.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 및 지방회계 관련 법령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22호, 2017.12.29개정)」의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가. 회계관직 겸직 금지원칙에 따라 회계관직 공무원 뿐 아니라, 회계 관직 공무원의 휴가·출장시 직무대리하는 직무대리자도 겸직 금지 되나 예외조항 신설 (안 제3조)
 - (신설) 정원이 소수인 관서(3명 이내, 5명 이내)는 예외적 허용
 - * 정원 5명 이내 관서 : 징수기관·수납기관 겸직허용
 - * 정원 3명 이내 관서 : 지출기관·출납기관 겸직허용
- 나.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세외수입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을 따르도록 하여 각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함. (안 제46조, 안 제151조)

- 다. 통합지출관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자금배정 기능 및 지출종합
계획수립 등에 관한 관계 부서간 기능 조정(안 제47조)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수립 : 세무1과장
(개정) 징수종합계획 : 세무1과장 /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
라. 과도한 채권 독촉절차를 상위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안 제152조)
마.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의견제출

-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전화032-560-4151, FAX560-27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032-560-415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 및 지방회계 관련 법령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22호, 2017.12.29개정)의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회계관직 겸직 금지원칙에 따라 회계관직 공무원 뿐 아니라, 회계관직 공무원의 휴가·출장시 직무대리하는 직무대리자도 겸직 금지되나 예외조항 신설 (안 제3조)
 - (신설) 정원이 소수인 관서(3명 이내, 5명 이내)는 예외적 허용
 - * 정원 5명 이내 관서 : 징수기관·수납기관 겸직허용
 - * 정원 3명 이내 관서 : 지출기관·출납기관 겸직허용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세외수입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을 따르도록 하여 각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함. (안 제46조, 안 제151조)
- 통합지출관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자금배정 기능 및 지출종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관계 부서간 기능 조정(안 제47조)
 -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수립 : 세무1과장
 - (개정) 징수종합계획 : 세무1과장 /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
- 과도한 채권 독촉 절차를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안 제152조)
-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된자가”를 “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추정가격”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서의장”을 “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상이한”을 “다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배정범위”를 “배정 범위”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나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실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1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 각”을 “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1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8조제2호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출납폐쇄일전”을 “출납폐쇄일 전”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매분기말”을 “매분기 말”로 한다.

제132조 중 “경과후”를 “경과 후”로 한다.

제135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1호서식)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6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③ (생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④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 ----- ----- ----- ----- ----- ----- ----- ----- -----.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u>자</u> 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⑤ ----- ----- ----- <u>사람</u> 은 ----- ----- ----- ----- ----- -----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 2. (생략)

3. 제1관서 (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지정)

가. ~ 다. (생략)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 차. (생략)

4.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해당 -----

마. ~ 차.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

----- 된 사람이 -----

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
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
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
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
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
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3.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투자심사) ① (생략)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
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
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 시
까지 해당 실·과장 및 관서의

- 없다. 다만,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

1. -----

----- 추정금액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투자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④
(생략)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각 실·과장, 구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서구세

장-----.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른 -----
-----.

제16조(예산의 이월) -----
구의회 사무국장 -----

-----.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

----- 배정 범위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 환급 -----

----- 「지방세기본법」 -----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1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1과장은 제18조에 따라 통합지출관, 각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

-----.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 기획예산실장과 통합지출관-----.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
각 -----

재를 받아 이를 각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1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생략)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

-----.

③ 통합지출관-----

-----.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

-----.

1. (현행과 같음)

2. -----
----- 해당 -----

-----.

3. (현행과 같음)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6조(수납절차) ①·② (생 략)

③ 구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생 략)

②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생 략)

----- 행정안전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현금납입-----

-----.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날 -----
-----.

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생략)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

③

행정안전부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출납폐쇄일 전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

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2호서식)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3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 ① (생 략)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른

----- 매분기 말 -----

-----.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 경과 후 -----
-----.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

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구의 부채에 대하여 <u>행정자치부 장관</u>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u>행정안전부 장관</u>----- ----- -----.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생략)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구급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에 따라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할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 략)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1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 ----- 「지방세징수법」-----
----- .

4. (현행과 같음)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1호서식)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세외수입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외수입금
3. 가산금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19., 2016.12.2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조(채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채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채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납일부터 1년이 지난 채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채납자
2. 1년에 3회 이상 채납하고 채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채납자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채납자

② 채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채납한 채납자에 대해서는 그 채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채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채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의4(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채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4조(지방세외수입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외수입금

3. 가산금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②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4(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5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8. 3. 5. ~ 2018. 4. 1.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일을 2018. 4. 30.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4.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2018년 3월 수시분 재산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4. 9. ~ 2018. 4. 30.
3. 공고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발 송 지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간주납기
1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231, 5동 401호 (관교동, 쌍용아파트)	윤**영	금곡동 531-5 (면적 948.0㎡)(2017년분)	20180430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207, 708동 1503호 (가좌동, 가좌마을)	정**모	대곡동 587 외 1건 (면적 1,126.0㎡)(2015년분)	20180430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C동 2405호 (정자동, 분당인텔리지2)	이**재	오류동 블록 74-2 인천검단힐스테이트3차 1단지 305동 1103호[연납](2016년분)	20180430

5. 문 의: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560-4209)